

특정감사

# 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– 2022년 해빙기 대비 공사현장 특정감사 –

2022. 4. .



# 1. 행정상 일람표

(단위 : 천 원)

번호	소 관	건 명	행정상 조 치		재 정 상 조 치					
			시정	주의	회 수	금액	감 액	금액	추 징	금액
계		1건	1	0	0	0	0	0	0	0
1	☆ ☆ 군과 ○ ○ ○ ○	○○○ 모험 레저파크 조성 및 ◇◇◇◇테마파크 진입도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	1							

# 2. 처분요구일람표

1. ○○○ 모험 레저파크 조성 및 ◇◇◇◇테마파크 진입도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(시정) ..... 1

일련번호		감사자		공개(○), 비공개( )
신분상 조치인원		재정상 조치방법	재정상 조치금액	
수감부서(처리부서)	○○○○과	처분요구일자	회신기일	

# 경 상 북 도

## 시 정 요 구

제 목 ○○○ 모험 레저파크 조성 및 ◇◇◇◇ 테마파크 진입도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

소 관 청 ☆☆☆군

관 계 부 서 ○○○○과

내 용

☆☆군 ○○○○과에서는 아래 [표]와 같이 ○○○ 모험 레저파크 조성 및 ◇◇◇ 테마파크 진입도로 정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.

### [표] 공사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공 사 명	위 치		사업량	도금액	계약일	사업기간	도급자	비고
	읍면	리동						
○○○○ 모험 레저파크 조성공사			물놀이장, 샤워장, 및 화장실 등	1,531	2021.03.23	2021.03.25.. 2023.03.14.	(주)△△건설	
◇◇◇◇ 테마파크 진입도로 정비공사			도로개설 및 장비 L=1.2km, B=10m	2,493	2020.12.22	2020.12.29. 2022.12.28.	(주)◆◆종합건설	

### 1. 품질시험계획 미승인 및 품질관리 부적정
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55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 토목공사, 연면적 660㎡이상 건축공사, 총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또한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9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[별표 5]에 따르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(이하 ‘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’)는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장비를 구비하고, 20㎡ 이상의 시험실 설치 및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품질관리자로 배치하여야 한다.

그런데 ☆☆☆군 ○○○○과에서는 ‘○○○ 모험 레저파크 조성공사 및 ◇◇◇◇테마파크 진입도로 정비공사’를 추진하면서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초급 품질관리 대상임에도 품질시험계획서에 대한 검토나 승인 통보를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, ○○○ 모험 레저파크 조성공사 시공업체는 설계내역에 계상된 품질시험실을 설치하지 않았고,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시험 및 품질관리 활동을 추진한 사실이 없으며,

또한, ◇◇◇◇테마파크 조성공사 현장은 품질시험실은 설치가 되어 있으나 시공업체에서는 품질시험기구를 비치하지 않았으며,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시험 및 품질관리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☆☆☆군 ○○○○과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검토·확인을 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## 2. 공사비 과다 계상 등 실시설계용역 감독 소홀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 49조 및 「공사감독자 업무규정」 제5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·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업무에 임하여야 하며, 같은규정 제19조의2에 따라 감독자는 설계도면·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,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시공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또한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, 「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

예정가격 작성요령」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따라서 공사감독자는 공사추진 시 공사가 설계도서 및 공정계획표 대로 추진이 되었는지 공사 시행 단계별로 정밀히 확인·검측하여 공사시설물이 차질 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당초 설계에 공사물량 및 공사자재 등이 과다 산정되었거나 현장여건의 변동 등으로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.

그런데도 ☆☆군 ○○○○과에서는 ◎◎◎ 모험 레저파크 조성공사를 추진 하면서 돌쌓기(조경석) 공종이 도면(전석쌓기)과 내역(유용석쌓기)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추진하였으며, 아울러 도면에 기재된 전석쌓기는 건설표준품셈 7-3-1(전석쌓기품)에 따르면 0.3m<sup>3</sup>~0.5m<sup>3</sup> 이상 큰돌을 쌓는 품으로 규정 되어있다.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조경석은 [사진 1]과 같이 0.3m<sup>3</sup> 이하 규격으로 찢쌓기품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면(전석쌓기) 및 내역(유용석쌓기)이 부적정하게 반영되어있으며 이를 검토·확인하지 않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설계용역 및 공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공사비 000천원(제 경비 포함)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.

[사진 1] 돌쌓기 설치 현황

돌쌓기 품 적용 부적정	

조치할 사항 ☆☆군수는

-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.(주의)
- ② 실험실(장비) 미구비 등 품질관리 소홀사항은 「건설기술진흥법」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라며,(시정)
- ③ 과다 계상된 사업비 000천 원은 「공사계약 일반조건」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.(시정)